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3. 13.(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차별이나 편견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통합교육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5호)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령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더 넓고, 더 두터운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 장애 학생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고 ‘권리’로서의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조 반영, ▲보편적 학습설계의 가치를 교육계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95,420	98,147	103,695	109,703	115,610
충북 특수교육대상자 수	4,136	4,244	4,492	4,690	4,956

[자료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는 이 같은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2022년 12월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가치를 지향하며,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장애인·비장애인 교육격차 완화 및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¹⁾ 하였음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의 주요 과제로는 ▲통합 교육 지원 제도개선, ▲장애학생 교육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일반교원과 특수교원 역량 강화와

1)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제6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2023~2027)’ 2022년 12월

협력 증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3년 4월 ‘충청북도 교육청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과정별 특수학교 신설 정책연구를 추진해 다양한 특수학교 모델 확산, ▲유치원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특수학급 21개 학급을 신증설, ▲내실 있는 통합교육 운영을 위해 중복형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통합학급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 확대,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교육부의 특수교육 정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통합교육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에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 이는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목적에 담은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2조에는 “통합교육”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충북에는 308개 학교에 708개 통합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742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첨부자료 1)
- 안 제4조에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통합교육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5년마다 수립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통합교육 정책과 세부 추진 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는 학교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일반학생과 함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을 반영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들이 법리적 측면에서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 바,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통합교육이 확대되어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024년도 시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현황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일반직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장애 영아 수	교원 수	
전체	195	5,582	30,027	10,441	1,822	9,512	13,931	65,966	14,904	8,352	18,255	19,254	363	1,739	115,610
서울	32	859	4,531	1,563	367	951	1,630	7,646	1,722	1,046	2,244	2,319	50	114	14,546
부산	15	377	2,064	709	137	535	673	3,465	706	634	1,761	1,906	-	88	7,435
대구	11	343	2,027	657	81	347	490	2,343	508	514	1,391	1,463	9	108	5,842
인천	10	357	1,988	613	54	517	833	4,464	865	571	1,574	1,695	14	107	8,161
광주	6	258	1,307	461	39	245	328	1,604	329	236	532	550	-	46	3,461
대전	6	196	1,115	374	52	283	405	1,977	427	237	479	491	13	56	3,596
울산	4	148	795	262	36	227	351	1,769	357	205	477	488	3	43	3,055
세종	2	55	279	92	14	131	160	726	157	86	167	174	-	19	1,179
경기	38	952	5,489	2,128	370	2,413	3,833	18,767	4,534	1,805	4,065	4,236	89	375	28,581
강원	9	203	919	350	76	378	419	1,836	419	292	471	490	4	71	3,249
충북	11	301	1,462	502	88	443	619	2,730	624	308	704	742	22	103	4,956
충남	10	288	1,441	504	78	565	980	3,020	964	323	492	500	5	105	5,875
전북	10	224	1,190	401	80	454	558	2,421	563	457	871	935	2	89	4,548
전남	9	231	1,240	441	106	573	757	2,957	760	225	276	291	-	75	4,488
경북	8	263	1,536	482	127	587	763	3,404	783	592	1,172	1,274	27	136	6,241
경남	11	415	2,049	708	91	742	1,074	4,860	1,075	646	1,174	1,248	5	157	8,162
제주	3	112	595	194	26	121	178	1,077	211	165	405	443	120	47	2,235

[자료출처: 교육부, 2024년 특수교육 통계(2024. 4. 1. 기준)]